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2020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NGUYEN MANH DUC	주민등록번호	891118-*****
근무처 명칭	주식****	사업자등록번호	135-86-020**
세대주 여부	[]세대주 [O]세대원	국 적	베트남(국적코드 : VN)
근무기간	2020.01.01 ~ 2020.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O]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O]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O]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O]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2	각종 소득	·세액 공제	∥ 항목				
	관계코드	관 계 성명 고 드		본 제	경로우대	출산기이층			보험	념료			의료			교육	욱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丏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자료 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 이상이 건강 보산제 특례	소. 실이 점 보	일반	장애인
I.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 하는 인원수를 적습니 다.		1	1	0	0	국세청 계	1,102,9 50	0	0	0	869,940	0	0	0	0	0
I.인적공제및소득			0	0	0	0	기타 계	0	0	0	0	0	0	0	0	3,995,0 00	0
세 및 소	0	NGUYEN MANH DUC	()			국세청	1,102,9 50	0	0	0	642,500	0	0	0	0	0
•	9	(근로자 본인)					기타	0	0	0	0	0	0	0	0	0	0
세액공제명세	3	HOANG THI PHUONG NHUNG					국세청	0	0	0	0	32,890	0	0	0	0	0
명 세	9	900510-*****					기타	0	0	0	0	0	0	0	0	0	0
.,	4	nguyen an Diep					국세청	0	0	0	0	194,550	0	0	0	0	0
	9	190316-*****					기타	0	0	0	0	0	0	0	0	3,995,0 00	0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료 구분	기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기부금
		3월	0	435,928	0	0	0	139,600	
국	국세청 계	4~7월	0	2,287,640	0	0	150,000	414,800	0
		그 외	1,908,160	4,048,930	71,700	5,288	164,150	147,050	
		3월	0	0	0	0	0	0	
	기타 계	4~7월	0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3월	0	435,928	0	0	0	139,600	
	국세청	4~7월	0	2,287,640	0	0	150,000	414,800	0
		그 외	1,908,160	4,048,930	71,700	5,288	164,150	147,050	
		3월	0	0	0	0	0	0	
	기타	4~7월	0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3월	0	0	0	0	0	0	
	국세청	4~7월	0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기타	3월	0	0	0	0	0	0	0

		4~7월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국세청		3월	0	0	0	0	0	0	
	네청	4~7월	0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3월	0	0	0	0	0	0	
기타	4~7월	0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관계코드 5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1950.12.31)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 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 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7.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 =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0 11 1				
II .	연금보험료	국	민연금보험료		주(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구미여=	규보험료 외의	고저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보험료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크포함표 되의 ' 연금보험료		주(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공제			연금5	보험료 계			0						
		=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기요양보험 포함	핰)	주(현)근무지	보험료	1,102,950	전액					
	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고용보험			주(현)근무지	보험료	0	전액					
			보호	료 계			1,102,950						
III .			대출기관차		H출기관차입		0						
특		주택임차차입금		 거주자 차입	원리금상환액	0	작성방법 참조						
					15년 미만		0						
별			2011년 이전		15년~29년	-	0						
			차입분		30년 이상	-	0						
소			2012년 이후	고정급	리이거나, 상환 대출	-	0						
		장기 주택	사업군			-							
득	주택자금		주택	주택	주택 저당			(15년 이상)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0	작성방법 참조
		서당 차입금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						
공		'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0						
O			2015년 이후 차입분	પાસ		_	0						
제			100	401 H	기타 대출	_							
7.11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주택자금	· 공제액	계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0						
	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이월액	0	작성방법 참조					
	(이월분)		지정기부	금(송교단	단제) 	기부금이월액	0						
			기부금0 	월분(합	·계)		0						
	,	개인연금지	더축(2000년 이	전 가입)	납입금액	0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	• 소상공인 공	제부금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청	약저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IV.	주택마련저축 -		근로자주	택마련자	^{남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ユ			주택청9	약종합저	축	납입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	축 소득공			0						
밖		2	018년 출자·투	자분	조합 등 벤처 등	출자ㆍ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의	투자조합	20	019년 출자·투	자분	조합 등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출자 등	20)20년 출자•투	자분	조합 등 벤처 등	출자 • 투자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소			투자조합 출지	등 소득	투공제 계		0						
		① 신용키	가트			사용금액	1,908,160						
득		② 잭**	선물가드			사용금액	6,772,498						
	Neare	③ 현금영	영수증			사용금액	71,700						
공	신용카드등 사용액	④ 도서	• 공연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5,288						
			니장사용분			사용금액	314,150						
제		⑥ 대중고	교통이용분			사용금액	701,450						
			계(①+②+)+6)		9,773,246						
			시사주조합 출연			출연금액	0	작성방법 참조					
			유지중소기업 근			임금삭감액	0	1001 12					
		장기 	집합투자증권지	1죽 ———		납입금액	0 210mm × 207mm	7888 02	는 중질지80g/m²]				

구분	1
지속 전	
지축일	
시액감면 전로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점수일 제출일 제출일 전고로 전로 전로 전로 전로 전로 전로 전	
세액감면 성과→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SATOR	
수령액 감면	
H 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공료일 국면기간 종료일 국면기간 종료일 국면기간 종료일 국면기간 종료일 국면기간 종료일 국면기간 종료일 국민기간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라모 공료일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경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되지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연금 계좌 원 보입금액 0 전금제화계 0 변급제화계 0	
변금	
보고	공제세액
변금 기작	
전급 1-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답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0 15%	
보고 보장성 보험료 0 보험료 0 100만원 12% 보험료 계 0 100만원 15% 보험료 계 0 100만원 15% 보험료 계 0 100만원 15% 보험료 계 0 15% 15% 보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난임시술비 지출액 지출액 0 사상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227,440 참조 20% 및 의료비 계 869,940 869,940	
V . 보험료 계 100만원 V . 보험료 계 0 내 액 보험료 계 0 라건강보험산정특례자 기출액 642,500 나입시술비 지출액 작성방법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227,440 일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0 의료비계 869,940	
V . 료 보험료 계 0 세 비 보인・65세 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642,500 라 나임시술비 지출액 0 가 나임시술비 지출액 15%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227,440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0 의료비계 869,940	
V. 세 세 의료 본인·65세 이상자·정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642,500 악 나임시술비 지출액 0 감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227,440 및 특 의료비계 869,940	
시 역 의료비계 (50%) 15% (50%) 기출액 (642,500 작성방법 가 전상보험신정특례자 기출액 (642,500 작성방법 가 조 (20%) 기출액 (15%) 기출액 (15%) 가 조 (15%) 기출액 (15%) 기	
액 의료 나임시술비 지출액 0 참조 20% 감면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227,440 15% 및 특 의료비계 869,940	
감 료 면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227,440 및 특 의료비계 869,940	
면 비 그 밖의 공세내상사 시출액 227,440 15% 면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0 및 의료비계 869,940	
및 특 의료비계 869,940	
A 14-171 005,540	
세 카타되 하는 / 1명사 유리의 함에나는 2,000,000 4명단 000명의	
세 내에고개 애 교 자들은 하고 드하고 (0 명) 고나그 이 1명단 200만의 15%	
공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0 명) 공납금 0 1명당 900만원	
제 장애인(0명) 특수교육비 0 전액	
교육비계 3,995,000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0 100/110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0 15%	
기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0 작성방법 또는	
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0 참조 25%	
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0 또는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0	
20%	
기부금 계 0 30%	
나세액(외화) 0	
나세애(워하) 0 -	
외국납부세액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0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0 10% 또는 12%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2021 년 01월 28일 NGUYEN MANH 및U€는 인)

VI. 추가 제출	VI.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지	ト 단일세율적용신청	형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X)				
2.종(전)근무지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0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0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X)				
	등 소득·세액 공자 로 적습니다)	테명세서 제출 여부	제출 (X) ※ 연 자	년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베출해야 합니다.	등 소득 •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l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 = × 로 적습니다)	제출 (X) ※ 월	월세액, 거주자 간 주 신청한 경우 해당 명/	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기	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	세서 (O), ②	기부금명세서 (X)	, ③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5. 장애인크게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 9. 소득・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 자금 ⁻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 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1111		안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급	무금액 중 이월된 기구금	은 해당연도 기무금모나 우선하여 공세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	성방법						
개인연금저	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	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내용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투자조합 추지고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출자공제	공제	2018년∼ 2020년 출자・투자분	10%(100%,7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신용카드 소득공 ²	_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하상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하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4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⑤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 시	적습니다. 금액을 적습니다. 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명해당하는 금액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니다. 영수증・직불카드・선불:영수증・직불카드・선불:이 서식에서 "도서 공장 선불카드) × 30%(20년 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20년 4월 1일~7월 31일 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카드) × 40%(20년 3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카드) × 40%(20년 3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연등 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합니다)사용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등, 도서·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20년						

⑥ 시요카드드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간하느	다으의 어느	하나에	해단하느	그애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금액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사용금액 "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구분

-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등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등사용분
 -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4. 공제한도: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8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자는 23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②+③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각 항목별 연간 1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 출연금 소득공제 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저축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세액공세 삭성망법
외국납부공	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죄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 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50세 미만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 50세 이상 연 6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연금 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50세미만은 연 700만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다만,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700만원) 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21 =1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합니다) 및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
	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
교육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중·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	① 법정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를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 의 사 항

-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	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	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 • : 공제부금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 · 저축 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의료비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특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세액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공제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교육비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
		합니다)
월세액 서	네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 의 사 항

-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 명	NGUYEN MANH DUC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891118-*****				
③ 상 호	주식*****	④ 사업자등록번호	135-86-020**				

(2020)년 의료비 지급명세

(/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본인 ⑤ 주민등록번호 등 해당 여부	⑨ 의료 ③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증하비 코드	(2) 난임 시술비 해당 여부							
8 9 1 1 1 8 - * * * * * * O	1	6 642,500 X							
9 0 0 5 1 0 - * * * * * * X	1	6 32,890 X							
1 9 0 3 1 6 - * * * * * * X	1	4 194,550 X							
	16 869,940								

「소득세법」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01 월 28 일

NGUYEN MANH DUC (서명 또는 인)

제출자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 2. 의료비 시합대증 승리로 및 20개기 10 로 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노인장기요양급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② 남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세무서장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nguyen manh duc	생 년 월 일	1989.11.18
근 무 처 명 칭	주식****	사업자등록번호	135-86-020**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4) 생년 월일	자료구분	(5)-1 소 계 ((6)+(9)+(1 2)+(15)+(1 8)+(21))	(6) 신용카 <u>드</u> (3월)	(9) 직불 · 선불카드등 (3월)	(12) 현금영 수증 (3월)	(15) 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 재) (3월)	(18) 전통시 장 사용분 (3월)	(21) 대중교 통 이용분 (3월)
(1) 내 · 외국인 구분	(2) 관계	(3) 성명			(5)-2 소 계 ((7)+(10)+(13)+(16)+(19)+(22))	(7) 신용카 드 (4~7월)	(10) 직불· 선불카드등 (4~7월)	(13) 현금영 수증 (4~7월)	(16) 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 재) (4~7월)	(19) 전통시 장 사용분 (4~7월)	(22) 대중교 통 이용분 (4~7월)
					(5)-3 소 계 ((8)+(11)+(14)+(17)+(20)+(23))	(8) 신용카 <u>드</u> (그 외)	(11) 직불· 선불카드등 (그 외)	(14) 현금영 수증 (그 외)	(17) 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 재) (그 외)	(20) 전통시 장 사용분 (그 외)	(23) 대중교 통 이용분 (그 외)
					575,528	0	435,928	0	0	0	139,600
			1989.11. 18	국세청자 료	2,852,440	0	2,287,640	0	0	150,000	414,800
외국인	소득자 본인	NGUYEN MANH DUC			6,345,278	1,908,160	4,048,930	71,700	5,288	164,150	147,050
ᅬԴ근	본인 			그 밖의 자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세청자 료 그 밖의 자료	0	0	0	0	0	0	0
		HOANG THI PHUON G NHUNG			0	0	0	0	0	0	0
외국인	 배우자		1990.05.		0	0	0	0	0	0	0
	"'' '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세처자	0	0	0	0	0	0	0
		NGUYEN AN DIEP	YEN 2019.03. DIEP 16	국세청자 료	0	0	0	0	0	0	0
외국인	직계비속 (자녀,입				0	0	0	0	0	0	0
	양자)	7.114 (216)		 그 밖의	0	0	0	0	0	0	0
				그 밖의 자료	0	0	0	0	0	0	0
	(5)	1 = 7"			0 772 246	1,000,160	0	71 700	0	0	701.450
(5)-1 합 계 액				9,773,246	1,908,160	6,772,498	71,700	5,288	314,150	701,450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스 인공기드	- 공포국공제	금액의 계인							
(24) 신용카드 사용분(3월) 공 제 금액 ((6)×30%)	(25) 신용카드 사용분(4~7월) 공제금액 ((7)×80%)	(26) 신용카드 사용분(그외) 공제금액 ((8)×15%)	(27) 직불카드등 사용분(3월) 공 제 금액 ((9)+(12))×60%	공제금액 ((10)+(13))×80	(29) 직불카드등 사용분(그외) 공제금액 ((11)+(14))×30 %	(30) 도선 · 등 등 사용분(3월) 제 금액 ((15)×60%) 공 사용분(4~ 공제금(공연 7월) 백 %)	(32) 도서·공연 등 사용분(그외) 공제금액 ((17)×30%)
(33) 전통시장 사용분(3월) 공 (34) 전통시장 (35) 전 사용분(3월) 공 (34) 전통시장 (35) 전		(35) 전통시장	(36) 대중교통 사용분(3월) 공	(37) 대중교통	(38) 대중교통	(39) 공제제외금액		금액	계산
제 금액 ((18)×80%)	제 1 기억뉴덕 세르기 기억뉴넉		제 금액 ((21)×80%)	(37) 대중교통 사용분(4~7월) 공제금액 ((22)×80%)	(38) 대중교통 사용분(그외) 공제금액 ((23)×40%)	(39)-1 총급여	(39)-2 최저사용 [((39)-1)×2	금액 25%]	(39)-3 공제제외금액
(40) 공제가능금 [(24)~(38)합계 -((39)-3)]	(41) 공자 액 [총급여 수준 280만원, 3 ((39)-1)×209	한도액 병 230만원, 성 30만원과 등 중 적은 금	2) 일반 공제금액 + (41) 중 적은 금액)	(43) 절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40) > (41)인 경우((40)-(41)과 (33)+(34)+(35)(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	(40)-(41)-((36)+(37)+(3	8)(한노 (:	가 (40)-(41)-(43)-(44)과 ((42)+(4 카도 (30)+(31)+(32)(한도		(46) 최종 공제금액 (42)+(43)+(44)+(45))
				•				$\neg \neg$	

구 분	계산식	(39)-3
(8) ≥ ((39)-2)	((39)-2) × 15%	
$(6)+(8)+(11)+(14)+(17) \ge ((39)-2) > (8)$	(8)×15% + {((39)-2) - (8)} × 30%	
$(6)+(8)+(11)+(14)+(17)+(20)+(23) \ge ((39)-2) > (6)+(8)+(11)+(14)+(17)$	(8)×15% + ((6)+(11)+(14)+(17)) x 30% + {((39)-2) - ((6)+(8)+(11)+(14)+(17))} x 40%	
(6)+(8)+(9)+(11)+(12)+(14)+(15)+(17)+(20)+(23) $(6)+(8)+(11)+(14)+(17)+(20)+(23)$	$(8)\times15\% + ((6)+(11)+(14)+(17))\times30\% + ((20)+(23))\times40\% + \{((39)-2)-((6)+(8)+(11)+(14)+(17)+(20)+(23)\}\times60\%$	
((39)-2) > (6)+(8)+(9)+(11)+(12)+(14)+(15)+(17)+(20)+(23	(8)×15% + ((6)+(11)+(14)+(17))× 30% + ((20)+(23)) × 40% + ((9)+(12)+(15)) × 60% + {((39)-2) - ((6)+(8)+(9)+(11)+(12)+(14)+(15)+(17)+(20)+(23)} × 8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21년 01월 28일

신청인 : NGUYEN MANH DUC (서명 또는 인)

귀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첨부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O. O.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 방법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⑫, ⑭란에서 차감하고 "㉑~㉒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 ⑥ ~ ৷ ②라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나. "⑥ ~® 신용카드"란, "⑨~⑪ 직불·선불카드등"란, "⑤~⑪ 도서·공연등사용분"란, "⑱~⑩ 전통시장사용분"란, "②~⑳ 대중교통이용분"란은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 기간('20년 1~ 2월,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 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⑩, ⑪, ⑰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다. "①~④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 7천이하인 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기간('20년 1~2월, '20년 8~12월)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7. ⑫~⑭번 항목의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9. "⑩-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⑪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10. ④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8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30만원입니다.
- 11. 도서·공연등 사용분과 도서·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